

수원 영통구 망포동 사회적 주택 입주자 상시모집공고

사회적 주택은 청년 주거비 경감 및 안정적 주거지원을 위해 사회적 경제주체(경기수원지역 자활센터)가 내 매입임대주택을 활용하여 다양한 주거 서비스 프로그램 등의 임대운영, 관리를 직접 수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입주자모집재공고일(상시)을 기준으로 무주택자인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분에게 공급합니다.

※ 신청자격별 세부 자격요건은 공고문 본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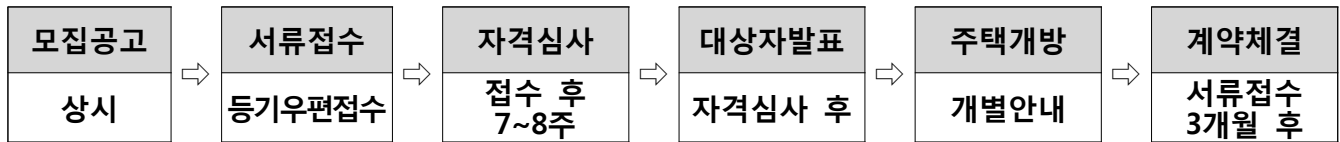
① 대학생 계층

- 대학생 :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복학 예정인 자
- 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자

② 청년 계층

- 청년 :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인 자
- 사회초년생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이며,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 2)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1. 모집일정



* 상기 일정은 사업진행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시기 등 추후 개별안내 드립니다.

2. 공급주택 : 경기도 수원시 영통로200번길 일원 우리빌 나동 (총 24실/여자12실/남자12실)

| 공급대상 | 면적(m ²) | | | 임대조건(원) | | 모집호실 |
|-------------------|---------------------|--------|-------|-----------|---------|-------|
| | 계 | 전용 | 공용 | 보증금 | 임대료 | |
| 201호 (3인 공동거주) | 77.526 | 69.83 | 7.696 | 3,000,000 | 160,000 | 201-1 |
| | | | | 3,000,000 | 160,000 | 201-2 |
| | | | | 3,000,000 | 160,000 | 201-3 |
| 202호 (3인 공동거주) | 84.661 | 76.257 | 8.404 | 3,000,000 | 170,000 | 202-1 |
| | | | | 3,000,000 | 170,000 | 202-2 |
| | | | | 3,000,000 | 170,000 | 202-3 |
| 301호 (3인 공동거주) | 77.526 | 69.83 | 7.696 | 3,000,000 | 160,000 | 301-1 |
| | | | | 3,000,000 | 160,000 | 301-2 |
| | | | | 3,000,000 | 160,000 | 301-3 |
| 302호 (3인 공동거주) | 84.661 | 76.257 | 8.404 | 3,000,000 | 170,000 | 302-1 |
| | | | | 3,000,000 | 170,000 | 302-2 |
| | | | | 3,000,000 | 170,000 | 302-3 |
| 401호 (3인 공동거주) | 77.526 | 69.83 | 7.696 | 3,000,000 | 160,000 | 401-1 |
| | | | | 3,000,000 | 160,000 | 401-2 |
| | | | | 3,000,000 | 160,000 | 401-3 |
| 402호 (3인 공동거주) | 84.661 | 76.257 | 8.404 | 3,000,000 | 170,000 | 402-1 |
| | | | | 3,000,000 | 170,000 | 402-2 |
| | | | | 3,000,000 | 170,000 | 402-3 |
| 501호 (3인 공동거주) | 77.526 | 69.83 | 7.696 | 3,000,000 | 160,000 | 501-1 |
| | | | | 3,000,000 | 160,000 | 501-2 |
| | | | | 3,000,000 | 160,000 | 501-3 |
| 502호 (3인 공동거주) | 84.661 | 76.257 | 8.404 | 3,000,000 | 170,000 | 502-1 |
| | | | | 3,000,000 | 170,000 | 502-2 |
| | | | | 3,000,000 | 170,000 | 502-3 |

* 부대시설 : 공용시설(주차장), 엘리베이터 없음, 1층자동현관, 각 호 자동도어락

* 관리비(2만원/1실) 미포함, 임대료 및 관리비 자동이체증 제출(必)

* 2,3층 여자/ 4,5층 남자만 거주 가능/호실 자동배정

3. 입주대상자 자격요건

1. 대학생 계층

□ 입주자모집재공고일(상시)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대학생은 ①-㉓와 ②~④, 취업준비생은 ①-㉓와 ②~④)을 모두 갖춘 분

- ① - ㉓ (대학생)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일 것
 - ① - ㉓ (취업준비생)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일 것
 - ② 혼인 중이 아닐 것
 - ③ 신청자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퍼센트 이하일 것
- * 이혼 등의 사유로 가족관계가 단절된 상태인 경우 실질적으로 부양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부 또는 모의 소득을 조히

| 가구원수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
|--------|-------------------------|
| 3인 이하 | 3,501,813원 이하 |
| 4인, 5인 | 4,092,832원 이하 |
| 6인 | 4,354,004원 이하 |
| 7인 | 4,638,067원 이하 |

- ④ 신청자 본인의 총자산이 7,400만원 이하이고, 자동차가액 산출대상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
- ⑤ 입주신청시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통장사본제출)

- ※ 무주택자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를 말함(세대내 다른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가능)
- ※ 대학은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 제31조 제4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고등기술학교 및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을 말함.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등 원격대학, 사내대학, 대학원, 대학원 대학은 제외
- ※ 고등·고등기술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고등·고등기술학교를 말함. 같은 법 제51조의 방송통신고등학교, 제55조의 특수학교, 제60조의3의 대안학교 및 고졸검정고시 등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고등·고등기술학교와 동등 학력 인정자를 포함하며 인정학력 취득시를 졸업 시점으로 간주함
- ※ 대학생 계층의 월평균소득기준 적용을 위한 가구원수는 신청자가 세대주인 경우 본인 및 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의 직계존비속 전원을 말하며, 신청자가 세대원일 경우 신청자 본인과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신청자의 직계존·비속 전원을 말하며, 신청자가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아닌 경우 신청자 본인과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신청자의 지계존비속 전원을 말함.
(단,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 않는 세대주의 형제·자매, 사위, 며느리, 장인, 장모, 시부모, 동거인 등은 세대주의 등본에 함께 등재된 경우라도 세대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가구원수 산정시 제외)
- ※ 이혼 등의 사유로 가족관계가 단절된 상태인 경우 실질적으로 부양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부 또는 모는 본인과 동일 주민등록표상 등재된 부 또는 모를 의미하며, 본인 등본에 부모 모두 미등재시 세대 분리 전 같이 거주하던 부 또는 모(부 또는 모가 같이 있을 경우 부 또는 모 중 1인 선택)를 말함
- ※ '다음 학기'란 입주지정기간만료일 직후 도래하는 학기까지를 말함
- ※ '다음 학기'에 입학 예정인 대학생은 공고일 현재 합격증명서 등을 통해 입학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하며, 입학 후 1개월 이내에 입학증명서 또는 등록금납부확인서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다음 학기'에 복학 예정인 대학생으로 공급신청한 자가 복학 후 1개월 이내에 재학증명서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2. 청년 계층

□ 입주자모집재공고일(상시)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청년은 ①-㉓와 ②~⑤, 사회초년생은 ①-㉓와 ②~⑤)을 모두 갖춘 분

- ①-㉓ (청년)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분
- ①-㉓ (사회초년생) 아래 1), 2), 3) 중 하나에 해당하는 분로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인 분
 -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중인 자
 - 2)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고용보험법」 제43조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 ② 혼인 중이 아닐 것
- ③ 신청자 본인의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퍼센트(3,501,813원) 이하일 것**
- ④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21,800만원 이하이고, 총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2,545만원 이하 일 것
- ⑤ 입주신청시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통장사본제출)

- ※ 무주택자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를 말함(세대내 다른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도 가능)
- ※ '소득'은 「소득세법」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을 말하며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통해 소득이 있는 여부를 판단함
-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상 납부예외자, 임의(계속)가입자 등 납부대상이 아닌 경우(미가입자 포함) 소득이 없는 것으로 판단함
- ※ ①-㉓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및 건강보험공단 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통해 소득이 있었던 기간을 합산함
단, 대학 또는 고등학교 재학(휴학포함) 중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병역의무 이행을 위하여 연구기관, 기간산업체, 방위산업체, 농업회사법인, 농업기계의 사후관리업체 등에 근무한 기간은 제외
- ※ ①-㉓ 2)의 퇴직은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통해 판단함
- ※ 해당세대는 ① 신청자가 세대주(세대원이 있는 경우에 한함)인 경우에는 신청자 본인과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비속을 말하고, ② 신청자가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는 신청자 본인만을 말함
- ※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저축 미가입자의 경우 입주전까지 청약통장 사본을 제출하지 않을 시 당첨 및 임대차계약이 무효 처리됨

4. 입주자 선정기준

□ 입주자 선정기준

1. 입주자 선정기준에 부합한 입주자중 선착순으로 선정
2. 수급권자 및 차상위로 주거문제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청년(만19~39세)
3. 수원 인근 소재 대학재학생 또는 기업에 근로하는 청년
4. 사회적 주택 운영기관(경기수원지역자활센터)에서 실시하는 사례관리를 동의하는 자
5. 사회적 주택 운영기관(경기수원지역자활센터)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 참여에 동의하는 자
6. 운영기관(경기수원지역자활센터)에서 시행하는 규정을 따르는 것에 동의하는 자

□ 모집인원

1. 여자 00명, 남자 00명
2. 정원 24명 입주가 가능 (여자 12명, 남자 12명)
3. 입주 호실 선택 불가 (자동배정)

5. 공급일정 및 신청방법

| 절차 | 일정 | 내용 및 공지 | 비고 |
|--------|--------------|--------------------------|----|
| 신청접수 | 상시 | 우편등기발송 | |
| 자격심사 | 신청접수 후 7~8주 | 개별안내 | |
| 대상자 발표 | 신청접수 후 9~10주 | 개별안내 | |
| 주택개방 | 대상자 발표 이후 | 개별안내 | |
| 계약체결 | 신청접수 후 3개월후 | 개별안내 및 운영기관 방문을 통한 계약 체결 | |

6. 입주자격 검증 등

□ 입주자격 검증

- 입주자격은 신청자격별 해당 세대가 무주택.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신청자 등 해당 세대는 국토교통부 주택소유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주택 소유 여부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득과 자산을 조회하여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 후 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금융자산 조회 안내

-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지침」의 시행(2016.12.30)에 따라 해당세대의 보유 자산 중 금융자산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 신청 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하여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함을 알려드리오니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 분 | | 안 내 사 항 |
|------------|---------------|---|
| 동의서 수집 사유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금융자산 정보 조회시 금융기관 제출용 |
| 동의서 서명 대상 | | 대학생 : 공급신청자 본인, 사회초년생 : 해당세대 |
| 서명 | 정보 제공 동의 | 금융기관에 서명 대상 전원이 각각 금융정보 제공을 동의 |
| |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 금융기관에서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서명자에 통보하지 아니하는 것을 동의 |
| 동의서 유효기간 등 | | 제출일부터 6개월이내 금융정보 조회시 유효 |

* 금융기관에서 명의자에게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의2(명의인에게의 통보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에 따라 금융거래 통보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나, '정보 제공사실 미통보' 서명시 금융정보 제공 사실 통보를 생략하여 해당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7. 제출서류(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상시)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함)

1. 공통서류

| 제출서류 | 비 고 | 부수 |
|--------------------------|--|----|
|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 대상자 : 해당세대에 속하는 자 전원 (“대학생 계층”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자 본인과 부모에 한하여 작성) * 만14세 미만의 자는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 1통 |
| 금융정보 등 (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 . 동의방법 : 공고 시에 첨부된 동의서에 대상자 전원이 서명 또는 날인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가 거부됨 | 1통 |
| 자산 보유 사실확인서 | .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한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내역을 기재하고 신청자가 서명하여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 * 임차보증금 및 임대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 분양권 : 분양계약서 사본 및 분양대금 납부확인원 ※ 신고 누락된 자산이 추후 확인되어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 처리할 수 있음 | 1통 |
| 주민등록표등본 | ※ 반드시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신청일 이후 '입주자 신청일 현재의 세대주'와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신청자는 '입주자 신청일 현재의 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 1통 |
| 주민등록표초본 | ※ 반드시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아래 해당자만 제출> . 해당세대에 속하는 자로서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또는 세대주 변동이 있는 자 | 1통 |
| 가족관계증명서 | . 혼인여부 확인 | 1통 |
| 임신진단서 | . 입주자 신청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대학생(취업준비생) 계층” 신청희망자 중 태아를 가구원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1통 |

2. 공급대상자별 추가제출서류

| 공급대상 | | 제출서류 | 발급처 |
|----------|-------------------------------|---|---|
| 대학 계층 | 대학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학증명서 다음 학기에 입학예정자는 입학증명서 또는 등록금납부확인서 다음 학기에 복학예정자는 휴학증명서 및 각서(공사양식)제출하고 복학 후 1개월 이내에 재학증명서 제출 | 해당 대학 |
| | 취업준비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학 또는 고등·고등기술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제적증명 | 해당 학교 |
| | 해당자만 제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모의 이혼 등으로 가족관계가 단절된 경우 부 또는 모의 혼인관계증명서(이혼사실확인) 신청자 본인 및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등·초본(동일 거주지 확인) | 주민센터 주민센터 |
| 청년 계층 | 청년 (만19세이상 ~ 만39세이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전체이력'으로 발급) ※ 국민연금 미가입자도 발급 가능 ※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등 타 공적연금 가입자의 경우 해당 연금 가입증명서 추가 제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통장사본 |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
| | 사회초년생 | <p>[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전체이력'으로 발급) ※ 국민연금 미가입자도 발급 가능 ※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등 타공적연금 가입자의 경우 해당 연금 가입증명서 추가 제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가입일부터 현재까지 전체내역으로 발급)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통장사본 <p>[퇴직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자로 구직급여 수급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퇴직 후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1년 이내의 고용보험 수급자격증 또는 수급자격 인정명세서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전체이력'으로 발급) ※ 국민연금 미가입자도 발급 가능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가입일부터 현재까지 전체내역으로 발급)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통장사본 | 국민연금공단 등 국민건강보험공단 가입은행 지방고용노동청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가입은행 |

*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원본제출(주택청약종합저축 사본 제외)이며, 선정이 안 된 경우라도 제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8. 무주택 · 소득 · 자산 검증기준

■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및 판정기준

- 검색대상 : 신청자 본인
-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의 소유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부동산 가액에 포함됨
 - ① 상속으로 인하여 공유지분을 취득하여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 나. 85㎡ 이하인 단독주택
 -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⑤ 20㎡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 제외)
 - ⑥ 공부상에는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 멸실, 타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⑦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소명방법 : 해당 주택이 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 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8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의 질의 회신문을 해당 지자체(시·군·자치구)로부터 받아서 제출

■ 소득·자산 산정방법

소득 및 자산 정보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받으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자료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지 않아 소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소명 처리 합니다.

| 구분 | | 산정방법 |
|------|-----|--|
| 소득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해당 세대의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미성년자는 공급신청자인 경우에 한하여 합산)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
| 총 자산 | 부동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 건축물 : 공시가격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해당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단, 아래 토지는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지법」 제2조에서 정한 농지로서 같은 법률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읍·면장이 관리하는 농지 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장용지를 목장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함. -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
| | 자동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 산출시 적용하는 자동차 가액은 해당세대가 보유한 모든 자동차의 가액을 합하여 산출하되,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 | 금융 자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예금의 잔액 또는 총 납입액 •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한다. •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예금증서: 액면가액 •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
| | 기타 자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 「지방세법」 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존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존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
| | 부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 공공기관 대출금 •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법원에 의하여(판결문, 화해·조정조서) 확인된 사채 • 임대보증금(단, 해당 부동산가액 이하의 금액만 반영) |
| | 자동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으로 포함되는 자동차액과 별도로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 자동차에 한하여 산출하되, 해당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제공 소득·재산 항목 설명 및 자료 출처

| 구분 | 항목 |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 자료 출처 |
|----|--------|---|--|
| 소득 | 근로소득 | 상시근로소득 상시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수월액 - 국민연금공단 표준보수월액 (소득신고)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자료 (사업주의 고용장려금 신고자료 /고용부담금 신고자료 : 근로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근로소득) |
| | 일용근로소득 | -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 -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 명세서 |

| | |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 - 고용노동부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 |
| | 자활근로소득 |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 - 자활근로자 근로내역 | |
| | 공공일자리소득 |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 - 고용노동부 '일모아' 근로내역 | |
| 사업소득 | 농업소득 |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농업소득=국세청 종합소득+농업직불금 |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농림축산식품부 농지원부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직불금 | |
| | 임업소득 |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
| | 어업소득 |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
| | 기타사업소득 |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증 | |
| 재산소득 | 임대소득 |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 국세청 종합소득 | |
| | 이자소득 |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 국세청 종합소득 | |
| | 연금소득 |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 국세청 종합소득 - 금융정보 조회결과 | |
| 기타소득 | 공적이전소득 |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 금품(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국방부퇴직, 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보훈처 보훈대상자명예수당 보훈처 보훈대상자보상급여 등 | |
| 총 자산 | 일반 자산 | 토지, 건축물 및 주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지방세법 제104조제1호~3호) : 「지적법」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 건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 - 시설물(지방세법 제6조제4호) :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 | - 지방세정 자료 |
| | | 자동차 |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 - 국토교통부 및 보험개발원 |
| | 기타 자산 | 임차보증금 | 주택, 상가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임차하는 대가로 소유권자에게 예탁한 보증금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등) | - 국토교통부 확정일자 정보 - 직권조사 등록 |

| | | | |
|------|--|---|------------------------------|
| | 선박·항공기 | 선박 : 기선·범선·전마선 등 명칭과 관계없이 모든 배를 의미 항공기 : 사람이 탑승 조정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비행선·활공기·회전익항공기 그밖에 이와 유사한 비행기구 | - 지방세정 자료 |
| | 입목재산 | 지상의 과수, 임목(林木), 죽목 등 입목(立木)재산 | - 지방세정 자료 |
| | 회원권 |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승마회원권, 요트회원권 | - 지방세정 자료 |
| | 조합원입주권 |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 지방세정 자료 |
| | 어업권 |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의 규정에 의한 면허어업에 대한 권리 | - 지방세정 자료 |
| | 분양권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
| 금융자산 |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 | 예금, 적금, 부금, 보험 및 수익증권 등 | - 금융정보 조회결과 |
| | 금융기관 대출금 | | 금융정보 조회결과 |
| 부채 | 금융기관이외의 기관 대출금 | | |
| |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 |
| | 법원에 의하여 확인된 사채 | | |
| | 임대보증금 | | |
| 자동차 |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 국토교통부 및 보험개발원 | |

9. 유의사항

| 관련항목 | 유의사항 | | | | |
|---|---|---------|---------|------------|----|
| 거주기간 및 재청약에 관한 기준 | <p>■ 입주 자격별 최대 거주기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1년입니다.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으며 최대 거주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style="background-color: #fff9c4;"> <th style="width: 40%;">입주자격</th> <th>최대 거주기간</th> </tr> </thead> <tbody> <tr> <td>대학생, 청년 계층</td> <td>6년</td> </tr> </tbody> </table> | 입주자격 | 최대 거주기간 | 대학생, 청년 계층 | 6년 |
| | 입주자격 | 최대 거주기간 | | | |
| 대학생, 청년 계층 | 6년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학생 계층인 입주자가 거주하는 중 청년 계층 자격을 갖추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변경된 공급대상의 임대조건으로 새로 계약을 할 수 있으며, 새로 계약을 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대상의 최대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합니다. 다만, 해당 입주자의 전체 거주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p>■ 재청약 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주자는 동일한 입주자격으로 다시 청약하여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다만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증빙서류 제출을 통해 재청약이 가능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역의무이행을 위하여 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계약을 하지 않은 경우(최대거주기간은 병역의무 이행 이전의 거주기간과 이후의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10년을 초과할 수 없음)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단,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연접지역 내에서 변경된 경우는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생 계층의 편입 등의 사유로 재학 중인 대학의 소재지 변경된 경우 · 청년 계층의 소득 업무 근거지가 변경된 경우, · 공공주택사업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거주지가 변경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 | | | | |

| | |
|---------------|---|
| <p>갱신계약 등</p> | <p>■ 갱신계약자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주택의 입주자격은 최초 계약 시 뿐만 아니라 갱신계약 시에도 유지하여야 합니다. 거주 중 입주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바로 퇴거하지는 않으나 갱신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 갱신계약자격은 공급대상자별 일반 공급대상자의 신청자격과 동일합니다. * 다만, 아래 경우는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생 계층의 경우 대학 재학, 다음 학기 입학 또는 복학예정자, 대학(또는 고등학교) 졸업(또는 중퇴)한 날부터 2년 이내 - 청년계층의 경우 만 19세이상 만 39세이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 5년 이내, 주택 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유지(월 5만원 이상 납입) • 거주기간 중 자격변동으로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새로 계약하는 경우에는 확인함 <p>■ 갱신계약 시 임대조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갱신계약 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 <p>신청자격 등</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주택의 입주자(세대구성원 전원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이어야 합니다. * 대학생 계층 및 청년 계층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및 제53조에 따르며, 입주신청 시 서약서에 명기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이 주택의 신청자격인 공급대상자격, 무주택자.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 기준 등을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거나 갱신계약을 하실 수 없습니다. • 현 주택상태 그대로 계약·입주하셔야 하며, 주택에 가전제품 등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라도 이는 임대목적물이 아니므로 보수나 교체는 불가합니다. 따라서 가전제품 등에 하자, 망실, 고장이 있더라도 이에 대한 A/S 요청, 보수 등은 입주자가 직접 처리하셔야 하며 관련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

10. 문의처

- 입주자격 및 제출서류 안내 : 경기수원지역자활센터(031-232-0179)
주거복지재단(031-738-4393)
한국토지주택공사 콜센터(1600-1004)

2018. 10. 17.

경기수원지역자활센터